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12. 3	1./(총 21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정 석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보건복지부	팀 장	이 경 진	·	044-202-2023
디지털소통팀	담 당 자	엄 현 철	전 화	044-202-203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전 화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12월 31일(목)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25.~12.3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7,04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6.7명이다.
 -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31.): 1,700명











○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70.4**%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에 서는 매일 300명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5.~12.3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08.4명	90명	37.3명	62.4명	71.7명	24.6명	12.3명
60대 이상	215.7명	22명	13.3명	20.3명	26.3명	12명	1.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12.30. 9시 기준)	95개	14개	17개	29개	37개	6개	7개

- 1일 평균 60대 이상 환자 수의 증가 등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 * (12.27.) 293명 → (12.28.) 295명 → (12.29.) 330명 → (12.30.) 332명 → (12.31.) 344명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 하고 있다.
 -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152**개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31.) **총 634,482건**을 검사하여 **1,700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3개소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 간호사 256명 등 의료인력 총 512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비수도권 지역도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개 광역시,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거나 준비 중이다.
 - * 부산 7, 대구 3, 광주 1, 대전 1, 포항 3, 울주 2, 완주 2, 천안 1, 목포 1, 순천 1(예정)











- 내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의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주 1회 시행하고,
 - * (기존)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 (변경) 전국 주 1회
 - 검사 대상시설도 확대하여 양로시설·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검사할 계획이다.
-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 이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신속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41명(12.31.)으로 감소** 하여 두 자리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 >

구분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일 이상 대기자(명)	183	185	179	158	96	63	57	23	41

-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 센터는 35개소 8,583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36개소 2,433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60개소 611병상을 확충하였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2.3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2.5%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2.6%로 **6,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6,678병상을 확보(12.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로 2,2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205병상,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
 - 이 중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583병상을 보유하고, 195 병상이 남아 있으며,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운영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268병상 중 10병상이 남아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운영하던 병상은 12월 31일까지만 통계 관리하고, 이후에는 전담치료병상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001E 00 E 0(12.00.1 E)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7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	TŒ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3,574	7,811	6,678	2,206	851	205
4	-도권	10,871	6,242	2,818	638	534	95
	서울	5,071	2,872	1,476	328	290	42
	경기	3112	1,728	925	216	185	38
	인천	540	297	417	183	59	15
	강원	164	37	197	39	20	6
충	· 등청권	482	289	779	206	57	14
호	∑남권	304	156	708	415	52	17
2	경북권	818	402	984	365	76	29
2	명남권	735	485	879	349	102	37
	제주	200	200	313	105	10	7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30.기준) >

- □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노인 전문병원은 잔류해 있던 확진자 37명 중 36명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1명도 신속히 전원 조치할 예정이며,
 - 확진되지 않은 92명은 간호 인력을 지원하여 해당 병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어제(12.30.) 중수본과 방대본, 지자체 합동으로 동일집단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 10개소, 정신병원 3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어제 점검한 요양병원 10개소*의 경우 확진자 대부분을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남은 확진자 40명도 신속히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 * 가은(경기 부천), 효플러스(경기 부천), 라이트(경기 안산), 인창(부산 동구), 제일나라 (부산 동구), 진(광주 북구), 양지(울산 남구), 순창(전북 순창), 백재활(전남 화순), 미소아침(경기 고양)
 - 이와 함께 병원에 잔류하는 비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력과 물품을 즉각 투입할 예정이다.
- 정신병원 3개소*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전원 조치하고 음성소망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 * 괴산성모병원, 음성소망병원, 진천도은병원
 -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밀접접촉자 분산**을 위한 **병상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확진자 63명 중 20명은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잔류 중인 확진자 43명도 신속히 전원 조치할 예정이며,
 -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인력을 모집**하는 한편, **간호사 3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새해맞이 국민 응원을 위한 디지털소통 추진계획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새해를 맞이해 다 함께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 응원 메시지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라는 동일한 테마로, 대상자별(가족, 청년층,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달될 계획이다.
 - 새해 첫날('21.1.1), '온 가족'을 대상으로 '집콕 댄스' 영상이 공개된다. 본 영상은 핵심 방역수칙(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을 중독성 있는 노래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으로 표현하였다.
 -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며, 보건복지부 블로그** 에서 누구나 음원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 www.youtube.com/mohwpr / ** blog.naver.com/mohw2016







집콕 댄스 모습

핵심 방역수칙 모습

○ 두 번째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개념 있는 '20대'를 조명한 'NEW HERO' 영상이다. '우리들이 만드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20대의 모습을 유쾌하고도 당당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 이 영상은 내년 1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 유튜브와 페이스북*, tvND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된다.
- * www.facebook.com/mohwpr / ** www.youtube.com/insiteTV1
- 세 번째로 국민 사연 접수를 통해 선정된 주인공에게 응원 문구와 선물을 비대면 방식인 드론을 통해 전달하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 공개하는 '어느 날,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진다면' 기획도 진행^{*}한다.
 - * 2021년 1월 중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 예정
-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정책'을 지난 12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카드뉴스로 제공 중 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수혜자 중심 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www.twitter.com/mohwpr



2021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정책 소개 카드뉴스 1편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이 위기를 온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 등을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20.12.24.~'21.1.3.) 동안 **17개** 부처는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소관 시설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28일과 29일 2일 동안 병·의원,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총 1,9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143건을 적발하여 108건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35건은 개선 권고하였다.
 - 병·의원의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이행 등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주요 감염경로로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요청하였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신도의 사찰 방문 자제, 교회 비대면 예배 원칙 준수 등을 안내하였다.
 - 특별대책이 시행된 이후(12.24~) **총 3,237개소를 점검하여 503건을 적발**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있으며,
 - 25개 지자체(광역 3, 기초 22)의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159개소의 방역관리 상황을 현장점검하였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번화가 9개 지역*의 유흥 시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12월 30일과 31일 2일간 진행한다.
 - * 이태원, 홍대, 압구정, 신촌, 건대, 신림사거리, 영등포역, 명동, 혜화
 - 활동이 많은 18시부터 21시까지 저녁 식사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1시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 포장·배달판매 준수 여부를 집중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한파에 대비하여 임시 선별검사소를 점검(12.30.)한 결과, 정부의 추가지원으로 난방기구, 난방용품 지급은 양호하였으며 교대근무나 자체 휴식 시간제를 통해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추진한다.
 -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은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식품과 마스크, 위생물품 등 기부물품 5종을 1회 선(先)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푸드마켓은 3개소(성남시, 평택시, 광명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 1월부터 31개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동절기를 맞아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근무자, 경기도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학조사 근무자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무자에게 방한용품(발열조끼)을 지원한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30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904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17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73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292명 감소하였다.
 - 어제(12.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 12월 30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1141개소, ▲PC방 1,339개소 등 23개 분야 총 4만64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98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96개반, 1,67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7,968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3.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u>▶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u>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
식당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u>▶ 집합금지</u>
눈썰매장)	▶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독서실 제외)	▶ 집합금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자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u> <u>▶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u> <u>▶ 집객행사 금지</u> <u>▶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u>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0017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지 당군단에 등 지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02 "0-2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21 -60060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u>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u>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식당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
70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
	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一/ iō, ōōō, 正型(iō)	1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 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m [·]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m²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u>▶ 집합금지</u>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 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 이용인원 10%이내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직장근무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워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